

國際商事契約에서 仲裁條項 삽입시 중재기관 선택에 따른 고려사항

오 원 석* · 정 희 진**

-
- I. 서 론
 - II. 기관중재의 장점
 - III. 기관선택시 고려사항
 - IV. 주요기관의 표준중재조항과 고려사항
 - V. 결 론
-

주제어: 중재, 표준중재조항, 기관중재, 중재지, 중재언어, 중재인 수

I. 서 론

국제상사계약에서 당사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할 경우, 그 합의가 미래분쟁에 대한 합의냐 그렇지 않으면 현존하는 분쟁에 대한 합의냐에 따라

*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2가지 형태를 취한다.

진자와 같이 당사자가 미래의 분쟁을 예상하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에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을 삽입하지만 후자와 같이 현존하는 분쟁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자신들의 계약과는 별도로 중재부탁계약(submission to arbitration)을 체결한다.

어느 경우나 당사자는 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중재절차, 준거법(절차법)의 선택, 중재지 또는 중재인의 선정방법 등을 기관의 도움 없이 자신들의 합의로 진행되는 임시중재¹⁾(ad hoc arbitration 또는 non-administered arbitration)와, 중재의 진행을 중재기관과 동 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기관중재(institutional 또는 administered arbitration)로 나눌 수 있다.

임시중재와 기관중재는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기관중재는 자체 중재규칙을 갖고 있고 중재절차를 관리할 수 있는 훈련된 조직을 갖고 있다. 또한 기관중재에서는 판정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기 전 이를 검토하므로 중재판정문의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는 점에서²⁾ 일반적으로 기관중재를 선호하고 있다.

각국은 대부분 단수 또는 복수의 국내 또는 국제중재기관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 논자는 계약당사자가 중재합의시 중재기관을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을 중재기관 상호간 비교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기관중재가 임시중재에 비하여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를 위하여 국제상사계약에서 중재조항 삽입시 중재기관 명기와 관련된 고려사항에 국한하였다.³⁾

1) 임시중재를 학자에 따라 "임의중재"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논자는 본 논문에서 기관중재의 대칭개념으로 "임시중재"란 용어를 사용한다. 그 이유는 "임의중재"는 "기관중재"의 대칭개념이 아니라 "강제중재"의 대칭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2) A. Redfern & M. Hunter,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4th ed., Sweet & Maxwell, 2004, p.48; I.C.C., Arbitration Rules(2012), Art. 33.

3) 유사연구로는 오원석,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기관 선택시 고려사항", 「무역학회지」 제31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6. 02. 75-94면, 오원석, "국제상사계약에서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s)의 주요요소와 실례", 「무역학회지」 제30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5. 10. 247-268면, 오원석,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기관 선택시 고려사항 (ICC, LCIA 및 AAA를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31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6. 75-94면, 오원석·서경, "국제투자계약상의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의 주요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전세계적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仲裁기관이 있으므로 이들을 서로 비교·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적으로 전통과 명성을 고려하여 I.C.C.의 仲裁법원(이하, ICC중재), 런던국제중재법원(이하, LCIA중재)과 미국 仲裁협회(이하, AAA중재⁴⁾)간 서로 비교하고, 필요한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이하, KCAB)과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이하, CIETAC)의 仲裁규칙과도 비교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仲裁기관 선택에 따른 실무상의 고려사항을 논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둘로 나누어, 하나는 기관선택시 고려사항을, 다른 하나는 주요기관의 표준중재조항 사용시 고려사항을 기술하고자 한다. 주요기관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ICC, LCIA, AAA, KCAB 및 CIETAC 외에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ICSID와 도메인 분쟁을 위한 WIPO중재의 Model Clause를 검토하고자 한다.

논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당사자가 중재합의시 仲裁기관을 결정함에 있어 仲裁기관을 비교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되길 희망한다.

II. 기관중재의 장점

기관중재는 仲裁판정부의 구성 및 仲裁절차진행을 주관하고 필요시 중재인 선정에도 관여하며, 仲裁과정에서 심리진행에 따른 편이성의 제공과 우편·통신 등의 행정절차를 도와주는 댓가로 仲裁비용을 징수한다. 이에 비하여 임시중재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없이 당사자와 중재인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중재를 말한다.

그렇지만 임시중재의 경우에도 중재합의시 당사자는 仲裁기관을 두지 않는

「무역상무연구」 제38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 05, 155-180면 등이 있다.

4) 1996년 AAA는 "International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ICDR)을 설립하여 AAA 국제중재를 관리하는 독점적 책임을 부여했다. ICDR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ICDR Rules")은 AAA중재규칙을 국제분쟁 중재에 사용하기 위한 규칙이다. (G. B. Bor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Wolters Kluwer, 2009, p.161.)

대신 중재의 준거법인 특정의 중재규칙을 지정할 수 있고,⁵⁾ 또한 당사자가 중재판정부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판정부 구성을 위한 중재인 선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LCIA와 AAA에서는 임시중재에서 당사자가 UNCITRAL 중재규칙을 채택할 경우 자신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기술한 책자를 발행해 오고 있다.

임시중재에서 위와 같이 기관중재의 성격을 가미한 것을 혼합중재(hybrid arbitration)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지만 혼합중재에 관련되는 중재기관도 자신들의 중재규칙의 적용이나 중재인 선정에만 관여할 수 있을 뿐 기관주도로 중재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역시 임시중재의 일종으로 볼 수 밖에 없다.⁶⁾

본 장에서 논자는 기관중재를 중심으로 그것이 임시중재에 비하여 갖게 되는 장점을 논급하고자 한다.

1. 검증된 중재규칙을 기반으로 중재편의성 제고

기관중재의 가장 큰 장점은 중재합의시 중재기관을 지정하고 동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라 안정적으로 중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재진행의 예견가능성과 안정이 보장된다.

물론 임시중재에서도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들 규칙들은 중재기관의 주도, 즉 중재기관이 중재진행을 맡아서 중재를 진행하는 전제하에 제정된 것이고, 규칙내에서 기관의 역할이 계속 언급되기 때문이다. ICC중재규칙에서는 ICC중재법원이 아닌 기관중재나 임시중재 등에서 ICC중재규칙의 이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⁷⁾ 따라서 ICC중재규칙은 ICC중재법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5) 중재규칙의 선택은 중재판정부에 맡기지 않고 당사자가 중재합의시 특정의 중재규칙, 예를 들면 "UNCITRAL Arbitration Rules(2010)"을 지정할 수 있다.

6) P. D. Friedland, *Arbitration Clauses for International Contracts*, Juris Pub., Inc., 2000, p.23.

7) ICC Arbitration Rules(2012), Art.1(2)···: The Court is the only body authorized to administer arbitrations under the Rules, including the scrutiny and approval of awards render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임시중재에서 당사자가 만약 중재규칙에 합의하지 못하면 중재진행이 공지에 몰리게 되고 최악의 경우 중재에 법원이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임시중재에서 당사자가 중재규칙은 UNCITRAL 중재규칙으로 합의하였다 하여도 중재인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법원의 사무총장(Secretary-General of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게 선정기관을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⁸⁾

2. 중재기관의 관리서비스 이용

기관중재는 중재기관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재신청서의 접수 및 통지에 따른 우편서비스, 중재비용의 수령 및 중재인 수당지급에 따른 영수증 처리, 심리장소의 제공 및 판정문의 검토 및 복사 제공 등이다. 특히 중재판정 후 일방이 판정결과에 불응하여 법원에 집행청구가 필요할 경우 기관중재의 장점이 더욱 커질 수 있다.⁹⁾

3. 중재진행의 유연성과 그 반론

임시중재는 중재가 당사자의 합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기관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기관중재 보다 더 유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임시중재의 이러한 장점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관중재의 경우에도 규칙에 따른 진행절차가 있으나 당사자가 합의하기만 하면 중재판정부는 사건에 맞게 진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LCIA중재의 경우 기관의 규칙보다 당사자의 합의를 우선하여 중재를 진행하도록 하므로 유연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다른 견해도 있다.¹⁰⁾ 다른 견해의 핵심은 유연성이 임시중재의 가장

8) UNCITRAL Arbitration Rules(2010), Art. 6.

9) 임시중재의 경우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청구를 할 때 N.Y.협약(Art. IV(1)(a))에서 요구하는 판정문 원본이나 확인된 복사본(duly authenticated original award or a duly certified copy)을 임시중재인으로부터 확보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

10) A. Redfern & M. Hunter, op. cit., pp.47-48.

큰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석유개발계약과 같은 정부당사자가 개입된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기관중재보다 임시중재를 선호하는 것이 바로 그 유연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재를 제도화하여 연계 되는 많은 기관중재의 편이성이 바로 임시중재의 유연성을 희생한 댓가라고 주장한다.¹¹⁾

결국 임시중재에서는 유연성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관중재의 경우에도 중재에 익숙한 당사자의 합의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일방 당사자의 중재진행 방해위험의 감소

임시중재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중재진행시 피신청인이 고의로 중재진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즉, 중재인 선임에 있어서나, 중재인 선임 후에도 중재인과 공모하여 전략적으로 중재의 진행을 방해하므로 결국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법원에 호소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피신청인의 대표적인 중재진행 방해의 예는 중재인이나 의장중재인 선임에 있어 계속하여 시간 연장을 주장하거나 또는 중재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그렇지만 기관중재의 경우에는 중재진행을 기관이 주도하므로 피신청인의 이러한 지연 전략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물론 기관중재의 경우에도 피신청인이 의도적으로 지연 전략을 사용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 양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신뢰를 갖고 있고, 장기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할 경우에는 비록 임시중재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지연 전략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관의 개입 없이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에 따라 임시중재를 이용하는 것이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이 될 수 있다.

11) Fouchard, Gaillard, *Goldman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Emmanuel Gaillard & John Savage, Kluwer, 1999, PP.33-35.

5. 집행가능성의 향상

기관중재에서 내려진 판정이 임시중재에 비하여 집행가능성이 높다는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은 중재기관의 개입 없이 1인 또는 3인의 중재인이 내린 판정문 보다는 확립된 중재기관의 주도하에서 내려진 판정이 집행가능성을 높인다고 믿고 있다.¹²⁾

집행과 관련하여 기관중재를 선호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ICC중재와 관련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주요한 국제중재기관의 공통된 사항이다.

ICC중재의 경우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문을 서명하기전 그것의 완결성, 중재규칙과 준거하는 국내법의 준수여부 및 판정문 내용의 일관성 등 형식(form)에 관하여 중재법원이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¹³⁾

따라서 ICC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판결을 요구받은 법원은 동 판정문이 ICC중재판정부(arbitral tribunal)뿐만 아니라 중재법원(court of arbitration)이 검토하고 승인했다는 점에서 안심하고 집행판결을 내릴 수 있다.

비록 ICC와 같이 판정문 검토제도를 갖고 있지 않은 기관중재의 경우, 판정문 발행전에 동 기관이 사전검토가 없었다 해도 중재기관이 선임했거나 확인한 1인 또는 3인의 중재인이 검증된 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라 내린 중재판정은 임시중재에 비하여 더 깊이 신뢰하고 집행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6. 중재비용의 예측가능성

임시중재의 가장 큰 장점은 중재기관에 납입하는 관리비용 (administrative fees)을 납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재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상사분쟁의 경우 ICC와 같은 중재기관의 관리비용은 당사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변호사 비용이나 중재인 수당에 비하여 우려하는

12) D. Freyer, "Practical Considerations in Drafting Dispute Resolution Provision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A US Perspective", *15 J. Int'l. Arb.*, 1998, p.7, 22.

13) ICC Arbitration Rules(2012), Art.33; Y. Derains & E. Schwartz, *A Guide to the ICC Rules of Arbitration*, Kluwer Law, 2005, pp.312-314.

만큼 크지 않다.¹⁴⁾

ICC를 제외한 다른 국제중재기관은 중재절차진행에 있어 ICC보다 덜 적극적이며 따라서 그들의 관리비용도 상대적으로 적다.¹⁵⁾ 따라서 분쟁당사자들이 기관중재보다 임시중재를 선호하는 것은 중재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반대의 주장도 있다. 즉, 기관중재의 가장 큰 단점은 역시 중재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특히 분쟁금액이 큰 경우 관리비용은 주로 가격기준(ad valorem)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¹⁶⁾

중재비용의 다른 한 축인 중재인 수당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임시중재에서는 중재인들이 종종 자신들의 수당을 분쟁금액 기준이 아닌 사건에 소요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징수한다. 이와 반대로 대표적 중재기관인 ICC중재의 경우 중재인 수당은 분쟁금액과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공통된 효율표에 따라 최대금액(maximum)과 최소금액(minimum)의 한도내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중재인 수당은 시간당 또는 일당으로 계산되는 임시중재에 비하여 분쟁금액이 큰 경우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관중재에서는 중재인 수당이 분쟁금액기준이므로 신속하게 해결되는 사건의 경우 중재인이 횡재를 가능성이 있다.¹⁷⁾

한편 LCIA중재에서는 비록 기관중재이면서도 중재인 수당을 시간당 또는 일당으로 계산하며, 대부분의 경우 통상적인 중재인의 수당율보다 낮은 효율표를 제시하고 있다.¹⁸⁾

결국 기관중재에서 임시중재에 비하여 절약되는 중재인 수당이 임시중재에

14) ICC중재의 경우 분쟁금액이 1,0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의 범위인 경우 관리비용은 57,515달러에서 1,000만 달러 초과분에 대하여 0.10%를 추가 한다. 이에 비하여 중재인 수당은 최소와 최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 최소는 39,167달러에서 1,000만 달러 초과분의 0.064%가 추가되며, 최대는 187,400달러에서 1,000만 달러 초과분의 0.2410%가 추가된다.(ICC Arbitration Rules, App. III, Art. 4.)

15) P. D. Friedland, *op. cit.*, p.27.

16) A. Redfern & M. Hunter, *op. cit.*, p.46.

17) W. L. Craig, W. W. Park, J. Paulss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rbitration*, 3rd ed., Oceana Pub., 2000, pp.29-36.

18) LCIA Rules, Art.5 & LCIA Schedule of Fees and Costs.

서 절약되는 관리비용 보다 클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중재인 비용과 관련하여 임시중재에서는 이를 당사자들이 중재인과 협상하여야 하는 어색한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기관중재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기관에서 처리된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¹⁹⁾

7. 미래의 분쟁에 적합

당사자가 미래의 분쟁을 대비하여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 발생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고자 중재부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관중재보다 임시중재를 이용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왜냐하면, 분쟁이 발생한 후에 중재부탁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가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선의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중재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할 가능성이 적다.

또한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미 분쟁의 성격을 알고 이에 적절한 중재절차를 스스로 준비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한 안전망으로 사용되는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중재가 미래의 분쟁을 대비한 중재조항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관중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예측가능하며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Ⅲ. 기관선택시 고려사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래분쟁을 대비하여 당사자간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삽입하고, 여기서 기관중재를 선택한다면 기관 선택시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19) ICC Arbitration Rules, App. III, Art. 2.4; LCIA Schedule of Fees and Costs., Art. 4(a); AAA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ICDR Rules"), Art. 32.

1. 각 기관의 중재규칙 비교

각 중재기관은 각각 자신만의 중재규칙을 갖고, 이들 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한다. 따라서 중재기관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들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표적 중재기관은 비교적 유사한 중재규칙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UNCITRAL에서는 모델법과 중재규칙을 제정하여 각국과 각 중재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⁰⁾ 그렇지만 중재기관에 따라 그 규칙간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

첫째, 중재지(place of the arbitration) 선택과 관련하여 LCIA규칙은 당사자간 합의한 중재지가 없는 경우 런던을 중재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ICC나 AAA의 중재규칙은 중재지에 관하여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기관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¹⁾

한편, 중국의 국제경제무역위원회(CIETAC)의 중재규칙은 LCIA와 같이 당사자간 이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동위원회 또는 그 분회 소재지를 중재지로 하기 때문에 중재지는 중국내가 되며,²²⁾ 우리나라 KCAB의 경우는 LCIA와 ICC중재규칙을 절충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 서울을 원칙으로 하되, 중재판정부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장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³⁾

둘째, 비밀유지(confidentiality)의무와 관련하여 LCIA규칙은 당사자에게만 중재판정이나 중재절차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²⁴⁾ ICC규칙, AAA규칙, CIETAC규칙 및 KCAB규칙 등은 비밀유지의 무자의 범위를 넓혀 중재인, 사무국 임직원, 당사자 및 그 대리인과 보조자 모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므로 중재의 비공개성(non-disclosure)의 특징

20)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1988) 및 UNCITRAL Arbitration Rules(2010)

21) LCIA Arbitration Rules(1998), Art. 16.1; ICC Arbitration Rules(2012), Art. 18; AAA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2010), Art. 13.

22) CIETAC Arbitration Rules(2012), Art. 7.

23)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2011), Art. 18.

24) LCIA Arbitration Rules(1998), Art. 30

을 잘 나타내고 있다.

셋째, LCIA규칙과 ICC규칙은 AAA규칙과는 달리 중재판정부로 하여금 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제3당사자의 참여를 허락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²⁵⁾ 특히 ICC는 2012중재규칙을 개정하면서 제3당사자의 참가(joinder of additional parties), 다수당사자간의 청구(claims between multiple parties), 다수의 계약을 하나의 절차로의 병합(multiple contracts) 및 복수의 중재절차를 하나로 병합(consolidation of arbitration)등을 새로이 규정하였다.²⁶⁾

그렇지만 CIETAC규칙이나 KCAB규칙은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한 규칙이 없다.

넷째, ICC규칙은 LCIA나 AAA 등의 국제규칙과 달리 중재법원이 중재판정부의 판정문을 발행하기 전 이를 검토(scrutiny)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²⁷⁾ ICC 중재법원은 중재판정부의 독립성을 침해함이 없이 판정문의 형식적 완결성과 준거법과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 문제에 까지 중재인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비록 중재인들은 중재법원의 논평에 기초한 실질적인 변경내용을 수용할 의무는 없지만 법원의 논평(Comment)은 판정문의 품질을 높이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이행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ICC중재의 특징으로 평가 받고 있다.²⁸⁾

다섯째, ICC는 국제중재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 구성된 법원을 통하여 중재진행과 관련된 중요한 행정적 의사결정을 한다. ICC법원은 그 구성에서부터 국제적일 뿐 아니라 중재과정에서 동 법원이 다른 어떤 국제중재기관 보다 더 철저히 감독하고 간섭한다. 대부분의 국제중재기구의 감독기능은 개별사건담당자(administrator)에게 맡겨져 있지만 ICC는 법원회원(court member)이 집단적으로 수행하므로 고도의 기관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²⁹⁾ 비록 ICC중재

25) LCIA Arbitration Rules(1998), Art. 22(h)

26) ICC Arbitration and ADR Rules(2012), Art. 7-10.

27) ICC Arbitration Rules(2012), Art. 33.

28) W. L. Craig, W. W. Park, J. Paulsson, op. cit., pp.375-384; Y. Derains & E. Schwartz, op. cit., p.5.

29) G. Naón, "The Power of the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vis-à-vis Parties and Arbitration", *ICC Ct. Bull., Arbitration in the Next Decade-Special Supplement*, 1999, pp.55-56.

법원이 중재과정에 관여의 정도가 심하다는 비판도 있지만,³⁰⁾ 중재판정의 안전성(security)을 높이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³¹⁾

이에 반하여 LCIA나 AAA의 경우, 행정적인 의사결정은 사무국에서 내부의 변호사나 자문역과 상의하여 결정하며, 이러한 점에서는 CIETAC이나 KCAB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ICC중재규칙의 가장 큰 특징은 당사자와 중재판정부가 중재개시 시에 준비하는 중재위탁요지서(Terms of Reference; TOR)이다.³²⁾

TOR의 의도는 당사자와 대리인, 청구내용과 쟁점 및 중재지와 준거법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³³⁾

동 규칙은 중재판정부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한 결정해야할 쟁점목록(list of issues to be determined)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므로³⁴⁾ 중재판정부와 당사자가 중재시작전 쟁점사항에 관해 일치된 견해를 갖고 진행하므로 추후 판정이 쟁점에서 이탈하거나 쟁점을 놓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 이러한 ICC의 TOR제도는 중재진행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으나 논자의 견해는 ICC중재판정의 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1988년 이전의 규칙은 TOR이 쟁점들의 정의(definition)를 포함하고 있는 바, 이는 비생산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결국은 중재인의 관할(jurisdiction)에 속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의 소지는 1998년 개정에서 제거되었다.³⁵⁾

그 후 ICC는 정기적으로 TOR조항을 그대로 둘지, 아니면 제거할 것인지 계속하여 검토하여 오면서 그대로 두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되어 그대로 존

30) Wetter, "The Present Statu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of the ICC : An Appraisal", *Am. Rev. Int. Arb.* Vol.1, No.1.(1990), p.91.

31) Nariman, "Arbitration Award-Challenge and Enforcement", *Globalization and Harmonization of the Basic Notion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IFCAI 1996), pp.168, 170.

32) ICC Arbitration Rules(2012), Art. 23.

33) P. Sanders, *Quo Vadis Arbitration? Sixty Year of Arbitration Practice*, 1999, pp.2-9.

34) ICC Arbitration Rules(2012), Art. 23(1)(d)

35) S. Lazarell. & E. Schäfer., "The 1992 Practical Guide on Terms of Reference Revisited", *ICC Int'l. Court Arbitration Bulletin*, Vol.10, No.2, pp.14-15.

속되고 있다.³⁶⁾

2. 중재인 선정시 기관의 역할

당사자가 기관중재에서 중재기관을 선정할 때 고려할 주요 요소중 하나는 선정된 기관이 중재인 선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임시중재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UNCITRAL중재규칙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 당사자간 중재인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이를 당사자가 합의한 선정기관에 의뢰하지만, 선정기관 자체에 합의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헤이그에 있는 상설중재법원(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의 사무총장에게 선정기관의 지정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⁷⁾

이에 반하여 기관중재의 경우 당사자가 중재인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지정된 기관의 사무국이 중재인 선정기관의 역할을 하며,³⁸⁾ 실제로 종종 동 기관이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였다. 그렇지만 당사자가 중재기관 선정에 합의할 때 각 기관의 중재인 선정기준, 후보자들 분포의 범세계성 및 부적절한 선정에 관한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특히 ICC의 경우 각국에 국내위원회(National Committee)를 두고 있으므로 중재인 후보자에 대한 방대한 pool과 정보망을 갖고 있고, 제기되는 각종 분쟁을 취급한 적절하고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다.³⁹⁾ ICC외에도 LCIA나 AAA 등도 중재인 선정관행에서 국제적 감각과 명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AAA의 경우, 중재인 선정이 최종적으로 동 기관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도 각 당사자는 일정한 역할을 행사한다. 즉, AAA 중재인 선정관습은 중재인 후보자 명단을 각 당사자에게 회람하여 일정 인원을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중에서 각 당사자에게 선호하는 순위를 부여하도록 하므로 당사자들이 자

36) Fouchard, Gaillard, op. cit., pp.666-671.

37) UNCITRAL Arbitration Rules(2010), Art. 6.

38) ICC Arbitration Rules, Art. 13; LCIA Arbitration Rules, Art. 5; AAA Arbitration Rules, Art. 6; WIPO Arbitration Rules, Art. 19; CIETAC Arbitration Rules, Art. 22; KCAB Arbitration Rules, Art. 12(언급된 "Rules"은 이들 기관의 가장 최근 개정된 중재규칙을 의미한다)

39) W. L. Craig, et al, op. cit., pp.25-27, 34-36.

신들의 의중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⁴⁰⁾

한편 러시아와 북유럽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스톡홀름상업회의소중재기관(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Arbitration Centre)(SCC)은 통상 중재지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장중재인으로 선정한다.⁴¹⁾

결국 중재기관이 중재인 선정과정에서 갖게 되는 역할과, 동원할 수 있는 중재인 pool등은 일반적으로 각 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르므로 기관선택이 중요한 고려사항임에는 틀림없다.

3. 사건담당자(Administrators)⁴²⁾의 자질

ICC와 같은 중재기관의 사건담당자는 여러국가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서 국제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어 기관의 각종 편의시설 이용, 통신 및 결제등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동 기관의 중재규칙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이다.⁴³⁾

KCAB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를 중재서기라고 하며, 논자의 경험에 의하면 중재서기는 중재의 진행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ICC를 제외한 다른 중재기관의 사건담당자는 ICC의 경우에 비하여 경험과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

사건담당자들의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면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이 증가될 수 있고 중재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

4.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

ICC와 같은 중재기관은 오랜 역사와 평판을 쌓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

40) P. Sanders, *op. cit.*, pp.230-231.

41) P. D. Friedland, *op. cit.*, p.31.

42) ICDR의 Administrator는 ICC의 사무국과 같은 기능을 하며 그가 중재통지를 받은 일자에 중재가 개시된다.(AAA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Art.2(1))

43) P. D. Friedland, *op. cit.*, pp.31-32.

진 중재판정은 특정국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⁴⁴⁾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ICC중재법원의 경우 중재시작전 중재위탁요지서를 작성하므로 분쟁의 쟁점과 청구내용을 확인하고 판정문 검토시 작성방법의 형식요건과 작성내용의 내적 일관성 및 절차적 준거법의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것이 법원에서 취소될 가능성이 낮다. 그러므로 이러한 판정문에 대하여 관할 법원이 집행판결을 요청 받았을 때에도 법원은 안심하고 집행판결을 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유명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은 내부에서 검토를 거쳐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중재기관을 선택할 때, 선택할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이 집행을 위해 법원에 집행판결이 신청되었을 때 집행거부판결이 내려진 빈도가 적은 기관을 선택하여야 한다.

5. 중재비용

기관이 영향을 주는 비용은 2가지가 있다. 즉 관리비용과 중재인 수당이다. 이 가운데 관리비용(administrative expense)은 매 사건마다 기관에 의하여 직접 결정된다. 관리비용은 각 중재기관마다 중재규칙이나 부록(Appendix)에 첨부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본비용에다 분쟁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지만 증가비율이 체감한다.⁴⁵⁾

중재인 수당은 중재기관이 결정할 수도 있고, 중재인과 당사자간에 의하여 결정할 수도 있다. ICC의 경우 중재법원은 사건의 복잡성, 중재절차의 신속성 및 분쟁금액 등을 고려하여 중재인 수당을 결정한다.

6. 중재지와 분쟁내용

많은 국제중재기관은 동 기관의 주된 영업지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되는 중재도 관리하지만 특정 지역이나 특정 도시에 특별히 적합한 중재기관이 있다.

44) P. D. Friedland, *op. cit.*, p.26.

45) ICC의 경우 분쟁금액이 미화 50,000달러까지 관리비용은 미화 3,000달러이며 그 이후는 미화 50,000~100,000, 100,000~200,000, 200,000~500,000등으로 늘어감에 따라 증가금액에 추가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든다.

예를 들면 스톡홀름 상업회의소 중재기관인 "SCC"는 스톡홀름 밖에서 진행되는 중재도 관리할 수 있지만 스웨덴이 아닌 지역에서 진행되는 중재에 "SCC"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 스웨덴이 아니라면 여러 관할권에서 중재를 관리한 경험이 많고 범세계적으로 중재인 pool을 갖고 있는 ICC나 AAA의 ICDR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가 싱가포르나 동남아시아에서 진행되는 중재의 경우 중재지로 적합하지만 북미지역에서 진행되는 중재의 경우 SIAC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

한편 중동지역에서는 카이로국제상사중재지역센터(Cairo Regional Centre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RCICA) 또는 두바이국제중재센터(Dubai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DIAC)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IT산업의 발달로 도메인네임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1999년 제네바에 본부를 둔 UN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내에 분쟁조정센터(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를 설치하여 도메인 분쟁을 포함하여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중재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WIPO중재를 위해 2002년 WIPO Arbitration Rules를 제정하여 이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고 있다.⁴⁶⁾ 마찬가지로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간"에 발생하는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해 1965년 협약⁴⁷⁾에 따라 세계은행 내에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를 설치하여 여기에서 투자분쟁에 관한 조정과 중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당사자가 중재기관을 선정할 때 중재지와 분쟁내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46) <http://arbiter.wipo.int>

47)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between State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일명 워싱턴 협약)을 말하며 이 협약은 1967년 3월 23일 조약 제234호로 우리법에 수용되었다.

IV. 주요기관의 표준중재조항과 고려사항

세계 주요 중재기관의 국제표준조항(International Model Clause)은 유사하나 공통적인 것은 당사자간에 발생한 분쟁이 해당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하도록 초안되었다. 결국 중재인의 선임이나 중재절차 그리고 판정등은 해당 중재규칙에 따르도록 한 반면, 몇몇 기관의 중재규칙은 중재인의 수, 중재지 및 중재언어 등은 당사자가 추가로 합의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ICC Model Clause

All dispute arising out or in connection with the present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y one or more arbitrator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said Rules.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모든 분쟁은 본 규칙에 따라 선임된 1인 또는 복수의 중재인에 의해 ICC중재규칙에 따라 최종 해결된다)

ICC는 분쟁해결을 위해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관리하는 국제중재법원과는 별도로 ADR규칙에 따라 ADR을 관리하는 국제ADR센터를 두어 중재를 보완하는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⁴⁸⁾

ICC표준중재조항은 KCAB등 다른 중재기관의 표준중재조항과는 달리 중재인의 수(number of arbitrators), 중재지(seat of arbitral proceedings) 및 중재언어(language to be used in the arbitral proceedings)를 합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ICC의 중재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48) ICC ADR Rules은 2001년부터 발효되었고, 선택적 ADR의 표준조항은 다음과 같다. "The parties may at any time,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proceedings, seek to settle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present contract in accordance with the ICC ADR Rules."

첫째, 중재인의 수는 1인 또는 3인이며, 그 숫자에 관하여 당사자간 별도 합의가 없으면 중재법원은 1인 중재인을 선정한다. 단, 분쟁의 성격이 3인 중재인의 선정을 보장하는 경우는 예외이다.⁴⁹⁾

둘째, 중재지(place of arbitration)⁵⁰⁾도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중재법원이 정한다.⁵¹⁾

중재법원이 중재지를 정하는 기준은 광대하다. 예를 들면 중재지 국가가 N.Y.협약 등 다자 또는 쌍무협약의 서명국인지 여부와 현지국 법의 중재에 대한 간여정도, 당사자 입장에서 본 중립성(neutrality), 당사자와 선정된 중재인의 입장에서 본 편이성 및 기타 요인들이 고려대상이다.

셋째, 중재언어는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정한다. 중재판정부가 중재언어를 정할 경우 고려사항은 계약언어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⁵²⁾

따라서 ICC표준중재조항을 이용하여 ICC중재를 합의할 경우 당사자는 필요하다면 중재인 수, 중재지 및 중재언어를 별도로 합의할 필요가 있다.

2. LCIA Model Clause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including any question regarding its existence, validity or termination, shall be referred to and finally resolved by arbitration under the LCIA Rules, which Rules are deemed to be incorporated by reference into this clause.

-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one/three].
- The seat, or legal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City and/or Country].

49) ICC Arbitration Rules(2012), Art. 12.

50) "중재지"를 실무에서는 "place of arbitration" 또는 "seat of arbitration"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도 이 2가지 표현을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한다.

51) ICC Arbitration Rules(2012), Art. 18; 2004년의 경우 ICC중재법원에 신청된 중재사건의 86%가 당사자간 중재지를 합의했다. (Y. Derains & E. Schwartz, op. cit., p.213)

52) ICC Arbitration Rules(2012), Art. 20.

- The language to be used in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
- The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shall be the substantive law of []."

(계약의 존재, 유효성 또는 종료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LCIA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며 중재로 최종 해결되며, 동 규칙은 본 조항에 언급되므로 본 조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LCIA규칙은 중재조항에 중재인의 수, 중재지, 중재언어 및 실체적 준거법을 추가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재조항에 중재의 관할에 관하여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직·간접적 문제와 계약유무, 유효성 및 계약종료에 관한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계약의 실체적 준거법(substantial governing law)을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조항내에 관련 조항을 두고 있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이 조항은 자칫하면 준거법 조항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시 유의하여야 한다.

중재인의 수, 중재지 및 중재언어는 중재조항에서 추가로 약정하도록 했으나 중재조항에서 이들에 관한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LCIA중재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중재인 수는 다른 중재기관의 경우와 같이 1인 또는 3인이며,⁵³⁾ 중재지는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런던으로 한다. 다만 LCIA법원이 모든 상황과 당사자의 서면언급을 고려하여 다른 장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이다.⁵⁴⁾ 중재언어는 원칙적으로 중재합의의 언어로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⁵⁵⁾

당사자가 중재합의시 LCIA Model Clause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계약서의

53) LCIA Arbitration Rules(1998), Art. 5.

54) LCIA Arbitration Rules(1998), Art. 16.

55) LCIA Arbitration Rules(1998), Art. 17.

준거법 명기의 일치여부, 그리고 중재지, 중재언어 등이 각각 런던이나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중재조항의 중재지와 중재언어 기재란에 명기하여야 한다.

3. AAA Model Clause

"Any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contract, or a breach thereof, shall be determined by arbitration administered by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in accordance with its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The parties should consider adding:

-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one or three)
- The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country)
- The language(s) of the arbitration shall be (specify)"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논쟁, 청구 또는 그 위반은 AAA의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AAA에서 관리하는 중재로 결정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원한다면 중재인 수(1인 또는 3인), 중재지 국가 및 중재언어를 추가할 수 있다)

국제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ICDR)는 AAA의 한 부서(division)이기 때문에 ICDR이 관리하는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Model Clause를 삽입하도록 권하고 있다.

"Any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contract, 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determined by arbitration administered by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in accordance with its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해석생략)

AAA Model Clause도 LCIA와 같이 당사자가 원하면 중재인 수, 중재지 및 중재언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당사자가 이를 추가하지 않으

면 AAA의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1인이 선정되나, 사건의 크기, 복잡성 또는 다른 상황을 고려하여 3인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이다.⁵⁶⁾

중재지의 경우 당사자가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Administrator가 우선 결정하고, 판정부 구성후 60일 이내에 중재판정부가 최종 확정한다.⁵⁷⁾ 중재지를 결정함에 있어 당사자의 의도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중재언어의 경우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중재합의가 포함된 서류의 언어로 한다. 그렇지만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의도와 중재 상황을 고려하여 달리 결정할 수도 있다.⁵⁸⁾

4. KCAB Model Clause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one/three]
- The seat, or legal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City/Country]
- The language to be used in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language]"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KCAB의 국제 중재규칙에 따라 서울에서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KCAB국제중재규칙도 다른 기관의 중재규칙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당사자가 원하고 합의가 되면 중재인 수, 중재지 및 중재언어를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6) AAA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2009), Art. 5.

57) AAA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2009), Art. 13.

58) AAA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2009), Art. 14.

중재인의 수는 ICC와 같이 원칙적으로 단독중재인이지만, 만약 당사자가 원하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없어도 당사자의 의도나, 분쟁금액, 분쟁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사무국이 3인중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3인중재인에 의하여 진행될 수 있다.⁵⁹⁾

중재지는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서울이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장소가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는 예외이다.⁶⁰⁾

중재언어는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간의 계약서의 언어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KCAB국제중재규칙은 2011년 국내규칙과 분리되면서 ICC중재규칙에 매우 유사하게 개정되었다. 따라서 중재인 수, 중재지 또는 중재언어 등에 관하여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동 규칙에 따라 결정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CIETAC Model Clause

"Any dispute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submitted to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for arbitration which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CIETAC's arbitration rules in effect at the time of applying for arbitration. The arbitral award is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중재를 위해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에 회부되며, 그것은 신청시 적용되는 CIETAC중재규칙에 따라 중재가 수행된다. 중재판정은 최종판정이며 당사자를 구속한다)

CIETAC중재는 Model Clause에 어떤 추가적인 합의문구가 없이 중재규칙

59)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2011), Art. 11.

60)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2011), Art. 18(1).

에 따르기로 작성되어 있다. 따라서 중재인 수, 중재지 및 중재언어는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중재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중재인 수에 관하여는 1인 내지 3인이며,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3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ICC나 KCAB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⁶¹⁾

중재지는 당사자의 합의를 우선하고 당사자간 합의가 없거나 합의내용이 애매할 경우에는 중재지는 CIETAC의 주소지나 사건을 처리하는 CIETAC의 분과위원회나 센터가 된다. 물론 CIETAC은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중재지를 다른 곳으로 정할 수 있다.⁶²⁾

중재언어의 경우도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이며, 당사자간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중재진행에 사용되는 언어는 중국어나 또는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CIETAC에 의하여 지정된 다른 언어가 된다.⁶³⁾

CIETAC중재규칙도 2012년에 개정되면서 ICC등 주요 국제중재기관의 중재규칙과 유사하게 되었으며, CIETAC중재건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6. ICSID Model Clause

국제투자분쟁 해결을 위해 ICSID중재합의를 한 경우 당사자간 투자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Model Clause를 삽입할 수 있다.

"The [Government]/[name of constituent subdivision or agency] of name of Contracting State (hereinafter the "Host State") and name of investor (hereinafter the "Investor") hereby consent to submit to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hereinafter the "Centre")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for settlement by arbitration pursuant to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hereinafter the "Convention")."

61) CIETAC Arbitration Rules(2012), Art. 23.

62) CIETAC Arbitration Rules(2012), Art. 7.

63) CIETAC Arbitration Rules(2012), Art. 71.

(채약국의 정부, 구성하부조직 또는 기관(이하 "투자유치국")과 다른 채약국의 국민(이하 "투자자")은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과 관련되는 분쟁을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에 따라 중재로 해결하기 위해 이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이하 "센터"; ICSID)에 회부하기로 본 계약을 통하여 합의한다)

ICSID Model Clause는 계약당사자가 ICSID관할에 속할 경우 자신들의 분쟁을 ICSID협약에 따라 중재로 해결하도록 합의할 뿐 더 구체적인 것은 동 협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만약 당사자가 자신들의 분쟁이 ICSID관할에 속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체적 합의문언을 규정하는 것이 좋다.⁶⁴⁾

"In the event that, for any reason, the [ICSID] Centre or an ICSID arbitral tribunal denies jurisdiction with respect to any dispute, then [select alternative arbitration clause]."

중재인 수에 관하여는 1인 또는 홀수로 구성한다. 당사자간 중재인 수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3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⁶⁵⁾

중재지는 원칙적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소재지이며,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상설중재재판소의 소재지(헤이그)나 기타 장소가 될 수 있다.⁶⁶⁾

중재언어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나 또는 2가지 언어의 사용을 합의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들이 해당 중재절차 언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공식 언어(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⁶⁷⁾

ICSID의 센터의 소재지가 워싱턴 D.C.의 세계은행내이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중재는 영어로 진행되며, 판정부의 구성은 3인으로 하되, 각 당사자가 1인씩 선정하고, 의장중재인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다.

64) P. D. Friedland, op. cit., p.109.

65) ICSID Convention(1965), Art. 37.

66) ICSID Convention(1965), Arts. 62, 63.

67) ICSID Rules of Procedure for Arbitration Proceeding, Rule 22.

7. WIPO Model Clause

IT산업의 발달로 도메인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전문성이 높은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중재가 거론된다.

"Any dispute,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under, out of or relating to this contract and any subsequent amendments of this contract,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its formation, validity, binding effect, interpretation, performance, breach or termination, as well as non-contractual claims, shall be referred to and finally determin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WIPO Arbitration Rules. The arbitral tribunal shall consist of a sole arbitrator or three arbitrators. The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specify place]. The language to be used in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specify language]. The dispute, controversy or claim shall be decid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specify jurisdiction]."

(본 계약과 후속되는 본 계약의 개정에 따라, 이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논쟁 또는 청구권은 그 형식, 유효성, 구속효과, 해석, 이행, 위반 또는 종료 및 비계약적 청구권을 포함하여 제한 없이 WIPO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어 중재로 최종 결정된다. 중재판정부는 1인 또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지는 []로 하며, 중재진행에 사용되는 언어는 []로 한다. 분쟁, 논쟁 또는 청구권은 []의 법에 따라 판정된다)

WIPO중재규칙은 Model Clause내에 중재인 수, 중재지, 중재언어 및 준거법을 명기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실체적 준거법을 중재조항에 삽입하도록 한 것은 LCIA Model Clause를 제외한 다른 기관중재의 Model Clause와 매우 다른 점이다.

중재인 수에 관하여는 당사자는 합의하여야 하지만 이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1인의 단독중재인으로 진행되지만, WIPO중재 및 조정센터가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3인중재가 적절하다고 결정할 경우는 예외이다.⁶⁸⁾ 중재지의 결정도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이지만 합의가 없는 경우 위의 센터가

당사자의 소견(observation)과 중재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⁶⁹⁾

중재언어는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중재합의(Arbitration Agreement) 언어이며, 단,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소견과 중재상황을 고려하여 달리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⁷⁰⁾

V. 결 론

계약당사자가 국제상사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다음 단계는 기관중재를 이용할 것인지 임시중재를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관중재가 임시중재에 비하여 갖는 장점을 검토하였는바, 기관중재가 중재진행, 판정의 집행가능성 및 중재비용의 예측가능성 등 여러 면에서 이용자에게 효율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어느 기관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관선택시 고려할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주요한 검토사항으로는 중재규칙, 중재인 선정시 기관의 역할, 사건 담당자의 자질,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 중재비용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제 요소를 감안하여 대표적인 중재기관인 ICC, LCIA, AAA, KCAB, CIETAC, ICSID 및 WIPO등을 논급하였다.

중재기관의 선택은 중재지의 결정과도 관계가 있다. 특히 중재지는 중재판정의 취소의 소가 제기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중재합의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만약 앞에서 언급한 중재기관을 선택할 경우 이들 기관들은 자신들이 제정한 표준중재조항을 삽입하기를 권하고 있다. 따라서 논자는 이들 기관의 표준중재조항을 검토하면서 논자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대부분의 중재기관의 표준중재조항에서는 중재인의 수, 중재지 및 중재언어를 당사자가 추가로 합의할

68) WIPO Arbitration Rules(2002), Art. 14.

69) WIPO Arbitration Rules(2002), Art. 39(a).

70) WIPO Arbitration Rules(2002), Art. 40(a).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각 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라 기관이 선정되며, 이럴 경우 대부분 기관의 소재지를 중재지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는 기관중재를 이용하여 동 기관의 표준중재조항을 삽입하더라도 중재인의 수, 중재지 및 중재언어의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합의 하여야 기관중재를 선택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만약 계약당사자들이 중재조항 삽입시 자국 중재기관의 표준중재조항을 삽입하기를 주장한다면, 이 경우 만약 양국중재기관 사이에 중재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합의하기 어려운 점을 양국중재협정에 따르기로 합의하므로 중재조항 합의에 따른 충돌을 회피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Born, G. B.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Wolters Kluwer, 2009.
- Craig, W. L., Park, W. W., Paulsson, J.,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rbitration*, 3rd ed., Oceana Pub., 2000.
- Derains, Y. & Schwartz, E. *A Guide to the ICC Rules of Arbitration*, Kluwer Law, 2005.
- Fouchard, Gaillard, *Goldman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Emmanuel Gaillard & John Savage, Kluwer, 1999.
- Freger, D. "Practical Considerations in Drafting Dispute Resolution Provision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A US Perspective", *15 J. Int'l Arb.* (1998)
- Friedland, P. D., *Arbitration Clauses for International Contracts*, Juris Pub., Inc., 2000.
- Lazarell, S., & Schäfer, E., "The 1992 Practical Guide on Terms of Reference Revisited", *ICC Int'l. Court Arbitration Bulletin*, Vol.10, No.2.
- Naón, G., "The Power of the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vis-à-vis Parties and Arbitration", *ICC Ct. Bull., Arbitration in the Next Decade—Special Supplement*, 1999.
- Nariman, "Arbitration Award—Challenge and Enforcement", *Globalization and Harmonization of the Basic Notion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IFCAI 1996)
- Redfern, A., & Hunter, M.,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4th ed., Sweet & Maxwell, 2004.
- Sanders, P., *Quo Vadis Arbitration? Sixty Year of Arbitration Practice*, 1999.
- Wetter, "The Present Statu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of the ICC : An Appraisal", *Am. Rev. Int. Arb.* Vol.1, No.1.(1990)

CIETAC Arbitration Rules(2012)

ICC ADR Rules(2001)

ICC Arbitration Rules(2012)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2011)

LCIA Arbitration Rules(2010)

New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1958)

ICSID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1965)

ICSID Rules Precedure for Arbitration Proceeding(1965)

UNCITRAL Arbitratio Rules(2010)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1985)

WIPO Arbitration Rules(2002)

ABSTRACT

A Study on Consideration factors for Selection of Institution, When Arbitration Clause Inserted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Oh, Won Suk
Jeong, Hee Ji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nsideration factors, from both parties' perspective, to select the most appropriate arbitral institution when they insert an arbitration clause in their contract.

Accordingly, the author analyzed the advantages of institutional arbitration compared to non-institutional arbitration.

The typical advantages of institutional arbitration would include:

- Benefits of using an established set of rules
- Services provided by the institution
- Low risks of obstruction
- Enhancement of the possibilities of enforcement
- Forecast of the estimated cost
- Specially useful for existing disputes

Next, this author examined the consideration factors when selecting the institution in respect of the following factors:

- Institution's arbitration rules
- Institution's rule regarding the appointment of arbitrators
- Ability of administrators of each institution
- Reputation of the arbitral institution and the likability of enforceability of its award

- Cost
- Choice of the arbitral institution in relation to the choice of place of arbitration

Finally, this author reviewed Model Arbitration Clause of major international or local Institutions, including ICC, AAA, LCIA, KCAB, CIETAC, ICSID and WIPO.

Further examination was given to the selection of the numbers of the arbitral tribunal, the seat of arbitration and the language of arbitration, according to the designated articles in each institution's arbitration rules.

Key Words : Arbitration, Institutional Arbitration, Administered Arbitration, Arbitration Model Clause, Place of Arbitration, Language of Arbitration, Number of Arbitrators